

#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유형

## Perception Types of Interested Group in College on the Education-welfare Support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이재환\*, 이수경\*\*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Jae-Hwan Lee(jhlee@suncheon.ac.kr)\*, Soo-Kyung Lee(soo9471@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장애 대학생 당사자는 물론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비장애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함의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는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요구형(유형1), 졸업 후의 직업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 맞춤형 서비스 요구형(유형2), 장애학생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이해 부족형(유형3), 그리고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양가감정형(유형4)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 중심어 : | 장애학생 | 교육복지 지원 | 인식유형 | Q방법론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erception types of interested group in college on the education-welfare support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by Q-methodology, then to search for political measures to support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in the implication of the sorted subjective viewpoin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are four major sorts of perception types on the education-welfare support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requests for realistic and comprehensive services for stable college life(Type1), requests for the disabled personalized services for the vocational life after graduation(Type2), lacks of understanding on the education-welfare support and disabled college students(Type3), and ambivalences on the education-welfare support(Type4).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several kinds.

■ keyword : | Disabled College Students | Education Welfare Support | Perception Type | Q-methodology |

## 1. 서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 실시한 전국 331개 4년제 및 전문대학의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평가에 참여

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평가점수가 향상(2008년 대비 2011년 향상도 결과, 20% 이상 향상된 대학이 53개교, 10% 이상 향상이 29개교, 10% 미만이 71개교)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에 참여한 331개 대학 중 개선을 요하는 대학이 212개 대학으로 과반수 이상(64%)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127개교)은 우수 이상이 3개 대학(2.4%)인 반면, 개선요망은 118개 대학(92.9%)으로서, 교육복지 지원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에 정부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전국 대학에 보급시킬 계획이며, 지원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추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등교육서비스 제공 당사자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경우, 교수·학습이나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업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수의 장애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2-5]. 특히, 장애대학생의 중도 탈락(2010년 기준 4.8%) 사유의 대부분이 학사경고 등 학업수행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에 대한 학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또한 교육과학기술부(2011)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매년 상승하여 2011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고등부 졸업생 16.7%가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7]. 하지만 어려운 입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은 정부의 지원 및 편의제공 부족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비장애학생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지만 대학의 지원 책무성 및 인적·물적 측면에 있어서

의 역량부족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국가와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정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욕구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방향은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욕구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장애학생 및 보호자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한 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7]. 장애학생 특별전형제도의 시행은 그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초·중등 특수교육에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에까지 관심을 가지므로써 장애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의 다양화와 다원화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를 극대화시키려는 정책 시행 당시의 정부가 추진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8].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는 학령기 장애학생 수의 증가(2005년 58,362명→2011년 79,711명)와 더불어 특별전형 등으로 인한 장애대학생 수의 증가(2011년도 장애대학생 수는 원격대학 1,947명, 전문대학 1,288명, 4년제 대학 3,741명 등 총 6,976명), 그리고 발달장애 및 기타 경도장애 학생에 대한 고려 등 장애인 고등교육의 수요 증가 및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령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6], 결국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고,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애대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강화,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와 관련한 평가를 전국 대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 절대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장애 대학생 당사자는 물론 대학 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교수 및 교직원, 비장애학생 등-이 갖는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도출된 각 인식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함의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태도 등을 유형화하는데 효용성이 높은 Q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은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유형은 어떠한가,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셋째,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유형이 갖는 사회복지적 함의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한 발전방안으로 어떠한 것을 제안할 수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교육복지 지원의 개념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법적 정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 활동으로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9].

교육복지의 개념은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의미를 지닌 용어로 여러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전술한 법적 정의와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태수(2004)는 교육복지의 개념을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소외 및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0], 김인희(2006)는 그 사회의 보편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교육의 영역 안에서 복지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1]. 또한 박현숙(2008)은 교육 취약집단들이 교육현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등 사회의 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관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12]. 또한 장애 대학생 당사자를 중심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인식을 연구한 김미선(2008)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 학생들은 대학의 교육복지 지원의 개념에 대해 각종 필요(편의적·학업적·정서적)의 제공, 대학의 의무, 제반 문제의 해결 등과 같은 대학생들과 관련된 지원을 비롯하여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학업수행과 관련된 지원, 그리고 편의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지원, 서로를 위한 기타 지원 등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원의 개념을 장애학생 당사자가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혹은 보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13].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복지 지원의 개념 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등에서 구분하고 있는 평가영역 역시 선발과 교수·학습, 시설·설비 영역으로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장애 대학생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등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활동 혹은 노력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 2. 대학 내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은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후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7년 5월 25일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의 제명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마련하였다[7].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1995학년도부터 도입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도 시행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기구 마련이 필요하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강화를 위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어 장애로 인한 교육활동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동법 제4조),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동법 제29조),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0조). 또한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하며(동법 제31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는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에 의해 대학생활 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내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한 법령들은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복지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 제정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불과 10여 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짧은 역사 속에서도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장애인복지 현장과 학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최근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14].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로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과 관련한 연구가 있으며[15][16], 이들 연구는 장애대학생 수업지원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과 요구 조사를 통해 장애대학생 수업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자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해당 지원방안은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과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원격교육지원이 청각장애 대학생의 강의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연구 결과, 원격교육 지원 이후 강의흐름에 대한 장애학생의 이해도와 강의내용

에 대한 흥미도,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 강의 참여에 있어서의 적극성 등 전반적으로 지원 이전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보였으나, 기기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격교육지원에 적합한 장비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대학생의 진로결정, 장애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진로결정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장애학생들을 위해 보다 적절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장애학생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수준이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여, 그들에 대한 상담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장애정체감과 관련하여서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정체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5][17][18]. 또한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분야에서의 속기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속기사의 자질과 역할, 그리고 이들의 근무여건을 토대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 연구 등이 있다[19].

최근에 이루어진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장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의 보다 나은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가령, 장애 대학생들이 교수·학습이나 편의시설 등의 측면에서 학교생활 적응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행연구[2-4] 등을 바탕으로 장애대학생의 학업과 진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안[20][21]되는가 하면,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여러 변인-심리적 변인(예: 불안, 우울, 자기개념 등), 사회적 변인(예: 사회적 지지,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참여도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22][23]. 이 밖에도 중증지체 장애대학생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요구

와 학교 당국의 대응을 살펴보고, 활동보조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24]와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여 이들의 도우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적연구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방안을 모색한 연구[25], 그리고 장애인의 고등교육은 학령기의 지식과 가치를 확대 생산하여 장차 직업 및 사회생활에서의 자립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발전단계로 보고, 이들 장애인에 대한 교육재활적 측면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한 연구[26],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 지원 연구[26], 장애 학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대학에서 겪는 경험과 바람직한 지원방법을 핵심그룹면접이라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13]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을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장애대학생이 대학 환경에서 어떤 대처와 노력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는지 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등 장애인의 긍정적 부분을 조명하는 연구[28]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경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 대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장애 대학생 당사자들의 주관적 견해를 중심으로 풀어낸 연구는 장애 대학생의 대학 내 지원에 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13]와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학생 도우미의 인식 보고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방안을 모색한 연구[25], 그리고 장애대학생 수업지원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과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을 지원하고자 한 연구[15]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 프로그램 등은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다양한 사회문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욕구를 확인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 대학생 당사자는 물론 이들과 이해관계를 가진 대학 내 구성원-교수 및 교직원, 비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이들은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장애 대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대안을 찾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장애 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Q모집단 표집

Q모집단 표집을 위해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활용하였으며, 문헌조사에서는 장애학생 교육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비롯하여 장애 대학생의 편익증진 및 학습 지원, 그리고 장애학생지원 등과 관련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그리고 연구보고서 및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한 Q모집단 표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에서는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special intersrt)”으로서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공정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dispassionate judge)”으로 장애인 교육재활 경험을 가진 특수학교 교사를 면접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권위자이거나 전문가(authorities, expert)”로는 사회복지학(장애인복지)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class interest)”으로는 현재 장애인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과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정보가 어둡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uninformed,

uninterested)”으로는 장애인과는 거리가 멀고, 장애인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적은 일반인 등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위한 보다 다양한 진술문을 수집할 수 있었다[29].

이상과 같은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149개의 Q모집단을 확보하였다.

#### 2. Q표본의 선정

표집된 149개의 Q모집단 가운데 중복적이거나 의미가 상반된 진술문 41개를 제거함으로써 Q표본 선정을 위한 108개의 진술문을 1차로 확보하였다. 해당 진술문이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및 특수교육 전문가(대학 교수 및 현장 실무자 3명)로 하여금 진술문을 검토하게 요청한 다음, 2명 이상이 응답한 진술문 74개를 확보하였다. 이후 연구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정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한 문장으로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또한 체계적인 표집을 위하여 무작위로 Q표본을 추출하되, 이를 좀 더 정교화하기 위하여 비례적으로 Q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2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24개의 Q표본인 진술문은 [표 1]과 같다.

표 1.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인식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

구분	Q-statements
Q01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Q02	대학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Q03	대학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Q04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의 장애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다.
Q05	입학, 수업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 제한, 배제, 거부 등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Q06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은 심리·사회적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까지 포함해야 한다.
Q07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장애학생 당사자들의 의사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Q08	장애와 관련하여 대학에 별다른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Q09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Q10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Q11	장애학생과 대학 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Q12	장애학생도우미 없이는 이동이나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Q13	장애학생에 관한 대학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Q14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Q15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성장이다.
Q16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이나 교수·교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Q17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Q18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란 장애학생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다.
Q19	장애학생을 위한 행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Q20	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이 필요하다.
Q21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고 있지 않다.
Q22	편의시설의 문제는 학업적 수행이나 대학생활 전반의 어려움과 관계된다.
Q23	학생 선발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수험편의 등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Q24	장애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려움과 학교 관계자 및 비장애학생 등이 인식하고 있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다.

선정된 24개의 Q표본을 긍정의 진술문 9개, 부정의 진술문 9개, 중립의 진술문이 6개가 되도록 구성함으로써 Q표본의 구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Q표본 선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진술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질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Q표본을 분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고, 소통에의 어려움이나 혼동여부 확인 등 진술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Q표본의 신뢰도 검사는 P표집을 위한 대상자 가운데 2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간차를 두고 2차례의 Q표본 분류를 실시하였고, 각 개인마다 2개의 Q표본 분류결과에 대해 상관계수를 구한 후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0.768로 상관계수(r)의 유의도 검증에서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P표본의 선정

Q방법에서는 조사대상인 P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

하고 요인들 간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30].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P표본의 선정은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지역 전문대학 가운데 연구자가 속한 대학을 중심으로 P표집을 위한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고, 해당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 가운데 장애 대학생, 비장애 대학생, 교수, 교직원 등 총 20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층화표본추출을 활용하여 각 대상 집단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 4. Q표본의 분류 및 자료처리 방법

Q표본의 분류는 조사대상자가 진술문의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유형 연구”와 관련된 진술문이 적힌 24장의 카드를 조사대상자에게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분류가 시작되었고, 분류작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연구결과 도출된 인식유형별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동의하는 것(3)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3)에 배치한 각 2장의 카드 내용에 관한 이유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한 조사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4개의 진술문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의견 등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Q표본 분류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PQMethod 2.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센트로이드 방법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자료처리를 위하여 맨 먼저 진술문을 설정하고, 조사대상별 Q분류 결과를 입력하였다. Q방법에 있어서의 요인 분석이란 변인을 분류하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항이나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성이 높은 문항이나 변인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방법으로서 양적조사에 있어서의 요인분석과는 차이가 있다[31]. Q를 활용한 요인분석 후, 10차례에 걸친 판단적 회전을 통해 최종적인 요인 적재치를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최초 추출했던 7개의 요인 가운데 판단적 회전을 통해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57%(15+29+8+5)의 설명변량을 얻었다. 끝으로 요인 간

상관계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각 요인을 정의하는 Q분류의 결과를 지정함으로써 Q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를 마무리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분석결과 나타난 Q 요인

진술한 바와 같이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Q표본을 분류하고 자료를 처리한 결과 모두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해당 Q요인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비슷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류한 것으로 Q연구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요인 추출 이전의 요인별 고유값과 설명변량의 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요인별 고유값 및 설명변량

구분	요인			
	1	2	3	4
EigenValues	7.0062	1.6943	1.8883	1.0924
% expl. Var.	15	29	8	5
cum %expl. Var.	15	44	52	57

분석 결과 나타난 Q요인별 특성은 [표 3]과 같이 정의변수의 경우, 요인1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진술문이 4개, 요인2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이 8개, 요인3은 2개, 요인4는 1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20개의 P표본 가운데 15개의 P표본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유형에 해당하며, 나머지 5개의 P표본은 이와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유형별 표준편차는 0.8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요인 내 편차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Q요인별 특성

요인	요인			
	1	2	3	4
No. of Defining Variables	4	8	2	1
Average Rel. Coef.	0.800	0.800	0.800	0.800
Composite Reliability	0.941	0.970	0.889	0.800
S.E. of Factor Scores	0.243	0.174	0.333	0.447

종합신뢰도는 요인 모두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요인점수의 표준오차를 볼 때, 요인1과 요인2는 진술문의 각 항목 간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요인3과 요인4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분석 결과 나타난 24개의 진술문 요인가는 Q연구에 있어서의 요인 해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30], 생성된 Q요인의 결과물 해석은 Q표본 분류표의 양극단에 위치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3)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3)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 4.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1	2	3	4
1	1.0000			
2	0.4246	1.0000		
3	-0.0182	0.3926	1.0000	
4	0.3354	0.3491	0.0351	1.0000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상관계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양적 연구에서의 요인분석 방법과는 달리 요인을 추출해 내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Q연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Q요인 간 상관계수의 낮음은 각 요인 간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표본인 연구 참여자의 요인행렬과 참여자 배경변인은 [표 5][표 6]과 같다.

표 5. 연구 참여자의 요인행렬

구분	요인			
	1	2	3	4
P01	0.2580	0.3045	0.0126	0.4372*
P02	0.2841	0.8076*	0.0768	0.1023
P03	0.5979*	0.3917	0.0363	0.1023
P04	0.2374	0.7508*	0.1103	-0.0983
P05	-0.0203	0.7315*	0.0440	-0.0762
P06	0.0473	0.8085*	0.0418	-0.0015
P07	0.0446	0.6046*	-0.3684	-0.1320
P08	0.3590	0.3804	0.1930	-0.2997
P09	0.7525*	0.1692	-0.1644	-0.2280
P10	0.3336	0.3323	0.1606	-0.2671
P11	0.0523	0.6157	-0.4510	0.3142
P12	0.3089	0.6618*	-0.1943	-0.1404
P13	0.4512	0.6570*	-0.1281	-0.2792
P14	0.2396	0.5818*	0.1480	0.1165
P15	0.1829	0.5437	-0.3221	0.1831
P16	0.5197	0.5346	-0.0609	0.2457
P17	-0.0043	0.2060	0.6227*	-0.3741
P18	-0.1029	0.5312	0.7350*	0.1664
P19	0.5863*	0.2145	0.2871	0.3315
P20	0.7953*	0.1163	-0.0190	-0.0808

표 6. 연구 참여자 배경변인

구분	배경변인		
	성별	집단구분	비고*
P01	남	교수	10년 이상
P02	여	교수	10년 이상
P03	여	교수	1~3년 미만
P04	여	교수	1~3년 미만
P05	여	교수	1~3년 미만
P06	남	교직원	10년 이상
P07	여	교직원	10년 이상
P08	여	교직원	1~3년 미만
P09	여	교직원	1~3년 미만
P10	여	교직원	1년 미만
P11	남	장애학생	지체1급/1학년
P12	남	장애학생	지체3급/1학년
P13	여	장애학생	지체3급/1학년
P14	남	장애학생	지체3급/2학년
P15	남	장애학생	지체2급/2학년
P16	남	비장애학생	1학년
P17	남	비장애학생	2학년
P18	남	비장애학생	2학년
P19	여	비장애학생	2학년
P20	여	비장애학생	3학년

\* 근무년수, 장애유형 및 등급, 학년

표 7. “유형1”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구분	Q-statements	Z-Score
동의	1.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1.434
	10.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1.371
	12. 장애학생도우미 없이는 이동이나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1.267
	6.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은 심리·사회적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까지 포함해야 한다.	1.007
	2. 대학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005
	22. 편의시설의 문제는 학업적 수행이나 대학생활 전반의 어려움과 관계된다.	-1.309
비동의	17.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1.163
	16.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이나 교수·교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1.215
	9.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1.220
	4.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에 장애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다.	-1.621
	8. 장애와 관련하여 대학에 별다른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1.949
	22. 편의시설의 문제는 학업적 수행이나 대학생활 전반의 어려움과 관계된다.	-1.309
	17.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1.163
	16.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이나 교수·교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1.215

유형1에서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의 특성상 비장애학생보다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P09)

“무엇보다도 재정확보가 되면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P20)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은 비장애인과 차이점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역차별이라는 용어는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P03)

“장애와 관련하여 대학 차원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에 허가했다는 것은 해당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등에 관한 암묵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P03)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센터는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할 경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 (P09)

## 2.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인식유형별 특성

### 2.1 유형1 :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요구형

아래의 [표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형1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 가운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3)은 Q1과 Q10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3)은 Q4와 Q8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와 대학 차원의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가장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와 관련하여 대학에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대학 내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듯하며, 이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측에 대변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P19)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24개의 진술문 가운데 유형1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은 [표 8]과 같다. 유형1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이란 요인1과 관련된 Q요인가와 나머지 요인 간의 점수 차가 유의수준 이하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24개의 진술문 가운데 유형1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모두 5개로 유의수준 0.05 이하인 진술문은 4개, 나머지 1개의 진술문은 유의수준이 0.01 이하임을 나타낸다.

표 8. “유형1”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

진술문 No.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RNK	SCORE	RNK	SCORE	RNK	SCORE	RNK	SCORE
12	2	1.27	-1	-0.78	-1	-0.83	0	0.00
2	2	1.01	-1	-0.45	-2	-1.20	0	0.00
3	0	0.16	-1	-0.51	-3	-1.50	-3	-1.74
22	-1	-1.04*	2	1.16	0	0.30	1	0.58
16	-2	-1.21	1	1.00	3	1.76	0	0.00

이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형1은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차원의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였다.

2.1 유형2 : 졸업 후의 직업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 맞춤형 서비스 요구형

표 9. “유형2”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구분	Q-statements	Z-Score
동의	20. 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이 필요하다.	1.526
	1.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1.333
	10.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1.244
	22. 편의시설의 문제는 학업적 수행이나 대학 생활 전반의 어려움과 관계된다.	1.161
	5. 입학, 수업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 제한, 배제, 거부 등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1.125
비동의	21.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고 있지 않다.	-1.042
	9.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1.073
	8. 장애와 관련하여 대학에 별다른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1.395
	13. 장애학생에 관한 대학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1.602
	4.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에 장애학생에 대한 역할이다.	-2.074

[표 9]에서 유형2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 가운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3)은 Q1과 Q20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3)은 Q4와 Q13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와 대학 차원의 재정확보가 필요하며, 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가장 동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2에서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였다면 비장애 학생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취업에 주된 초점(focus)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04)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에게 맞는(장애 특성을 고려한) 취업교육을 지원해 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P13)

“장애인도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서비스와 장애 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14)

“장애학생 지원센터만 설치되어져 있을 뿐,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장애학생들과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P02)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출발선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P04)

“장애학생 지원계획이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져 있다면 전교직원이 공유하여야 하며,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별도의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P05)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07)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P13)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24개의 진술문 가운데 유형 2가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은 [표 10]과 같다.

표 10. “유형2”가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

진술문 No.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RNK	SCORE	RNK	SCORE	RNK	SCORE	RNK	SCORE
16	-2	-1.21	1	1.00	3	1.76	0	0.00
3	0	0.16	-1	-0.51	-3	-1.50	-3	-1.74
13	0	0.04	-3	-1.60*	-1	-0.26	3	1.74

이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형2는 “졸업 후의 직업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 맞춤형 서비스 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 필요가 장애학생의 장애특

성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연결되어 결국은 졸업 이후 장애학생의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였다.

2.3 유형3 : 장애학생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이해 부족형

[표 11]에서 유형3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 가운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3)은 Q9와 Q16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3)은 Q3과 Q10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장애학생 및 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입장에 가장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유형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재정확보와 대학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유형3”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구분	Q-statements	Z-Score
동의	9.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1.764
	16.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이나 교수·교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1.764
	5. 입학, 수업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 제한, 배제, 거부 등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1.088
	1.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1.088
비동의	2. 대학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201
	4.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의 장애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다.	-1.238
	7.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장애학생 당사자들의 의사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1.351
	3. 대학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501
	10.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1.614

유형3에서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을 접할 기회도 없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장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P18)

“장애학생만을 위한 재정확보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차원에서의 재정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P17)

“대학에서 학생들의 졸업 이후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장애학생은 더욱...” (P18)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24개의 진술문 가운데 유형 3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은 [표 12]와 같다.

표 12. “유형3”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

진술문 No.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RNK	SCORE	RNK	SCORE	RNK	SCORE	RNK	SCORE
9	-2	-1.22	-2	-1.07	3	1.76*	-2	-1.16
16	-2	-1.21	1	1.00	3	1.76	0	0.00
2	2	1.01	-1	-0.45	-2	-1.20	0	0.00
7	-1	-0.50	0	-0.15	-2	-1.35	0	0.00
10	3	1.37	2	1.24	-3	-1.61*	2	1.16

이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형3은 “장애학생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이해 부족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장애학생과 이들을 위한 대학 차원의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비장애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 등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장애학생만을 위한 지원보다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을 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며, 대학졸업 이후의 지원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였다.

2.4 유형4 :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양가감정형

[표 13]에서 유형4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양극단 진술문 가운데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3)은 Q13과 Q15이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3)은 Q3과 Q19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에 관한 대학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져 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성

장에 있다는 입장에 가장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차원의 행정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져 있지 않으며, 대학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4에서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학 차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져 있다고 본다. 또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직업인이 되기 위함이며, 대학은 또 다른 복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0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센터가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별도의 행정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P01)

표 13. “유형4”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구분	Q-statements	Z-Score
동의	13. 장애학생에 관한 대학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1.745
	15.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성장이다.	1.745
	10.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1.163
	11. 장애학생과 대학 간의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63
비동의	24. 장애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려움과 학교 관계자 및 비장애학생 등이 인식하고 있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다.	1.163
	21.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고 있지 않다.	-1.163
	4.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에 장애학생에 대한 역할이다.	-1.163
	9.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1.163
	3. 대학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745
19. 장애학생을 위한 행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1.745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24개의 진술문 가운데 유형 4가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은 [표 14]와 같다.

표 14. “유형4”가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

진술문 No.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RNK	SCORE	RNK	SCORE	RNK	SCORE	RNK	SCORE
13	0	0.04	-3	-1.60	-1	-0.26	3	1.74*
15	1	0.75	0	0.02	0	0.41	3	1.74
16	-2	-1.21	1	1.00	3	1.76	0	0.00
20	1	0.91	3	1.53	2	0.94	-1	-0.58*
19	0	0.44	0	-0.26	0	0.26	-3	-1.74*

이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형4는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양가감정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장애학생에 관한 대학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져 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성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행정지원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져 있지 않고, 굳이 장애학생의 대학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였다.

## V. 결론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한 대학 내 이해관계 집단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 결과, 장애학생 당사자는 물론 교수 및 교직원, 비장애학생 등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인식유형은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요구형(유형1), 졸업 후의 직업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 맞춤형 서비스 요구형(유형 2), 장애학생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이해 부족형(유형3),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양가감정형(유형4) 등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유형1(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요구형)은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 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 반면,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의 장

애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며, 장애와 관련하여 대학에 별 다른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2(졸업 후의 직업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 맞춤형 서비스 요구형)는 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이 필요하며,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 반면, 장애학생에 관한 대학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져 있으며,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의 장애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장애학생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이해 부족형)은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이나 교수·교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한 반면, 대학 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과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4(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양가감정형)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져 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성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 반면, 대학 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과 장애학생을 위한 행정지원체계가 마련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이 갖는 인식유형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장애학생 당사자는 물론 교수 및 교직원, 비장애학생 등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은 장애학생이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보다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의 물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 차원의 재정확보, 그리고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 및 진로지도, 상담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 지원 계획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난 해 시행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

가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소수자를 위한 지원은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측의 지원의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활법이나 미국의 장애인법 등을 통한 기본적인 고등교육 접근권 확보 지원의 의무화와 같이 각 대학이 스스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강행규정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도입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수당이나 고등교육계정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장애학생의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직업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학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내 장애학생들의 의견수렴과 욕구조사 과정을 통해 해당 장애학생들의 장애특성과 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입학 당시부터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한 전공 선택 지도, 대학과 지역 산업체, 그리고 특수교육 현장 간의 연계망을 통한 취업지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졸업 전 직업생활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 등의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 가운데에는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정확보나 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복지 지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장애학생 당사자들의 의사나 장애 특성, 전공,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교육 및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이해와 관련된 정규 강좌개설이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학 내에서 장애라는 벽을 허물게 되고, 실질적인 교육 평등은 물론 정상화라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 가운데에는 양가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 성장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장애학생의 대학졸업 이후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과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 차원의 계획은 마련되어져 있으나, 실질적인 행정 지원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어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이들 구성원들이 느끼는 양가감정의 존재 자체의 확인과 그 처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장애학생을 둘러싼 대학 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서로 모순된 감정의 양면에 대해 이들 스스로의 자기인식과 통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공유의 장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유형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및 졸업 후의 직업생활 영위, 그리고 장애 이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Q방법은 관찰된 현상에 내재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연구 참여자인 P표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찾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효용성을 찾을 수 있으나, 제한된 P표본의 추출-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으로서 교수와 교직원,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을 각각 5명으로 추출-과 P표본 가운데 장애학생들이 갖는 장애특성의 제한점-대학 내 장애학생수의 제한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지체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P표본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등으로 인해 전체 장애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있어, 그리고 보다 다양한 인식이나 태도, 의견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학 내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인식유형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이들에 대한 가장 격조 있는 처우라고 여겨지며, 이러한 조치가 결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http://www.mest.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30282>  
 [2] 원종례, “장애대학생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8권, 제1

호, pp.47-70, 2008.  
 [3]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p.335-357, 2003.  
 [4] 김진호,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분석”, 인문과학논총, 제13권, pp.119-136, 2004.  
 [5] 최지영,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571-2589, 2008.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2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자료집, 2011.  
 [7]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1.  
 [8]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방안, 1998.  
 [9] <http://www.moleg.go.kr/main.html>  
 [10] 이태수, 교육복지 구현 종합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11] 김인희,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3호, pp.289-314, 2006.  
 [12] 박현숙,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학교의 기능 변화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비교 서울시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3] 김미선,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지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pp.121-136, 2008.  
 [14]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발전 방안, 2011.  
 [15] 김동일, 손지영, “장애대학생 수업지원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과 지원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0권, 제1호, pp.85-112, 2009.  
 [16] 김주영, “원격 교육지원이 청각장애 대학생의 강의참여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2권, 제1호, pp.435-458, 2011.

[17] 석말숙, 강동욱,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6권, 제4호, pp.171-194, 2005.

[18] 이웅, 이주희, 이한나,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 제10권, 제3호, pp.245-268, 2003.

[19] 김주영, 김은숙,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분야에서의 속기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일 연구”,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pp.185-205, 2005.

[20] 김동일, 손지영, “장애 대학생의 효과적 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 설계 전략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42권, 제4호, pp.293-312, 2008.

[21] 육주혜, 이효성, 진홍섭, 석말숙, 이준석, “장애대학생의 EDI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효과분석 연구”, 연구개발, 제16권, pp.1-85, 2006.

[22] 김자경, 강혜진,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비교”,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제51권, 제2호, pp.211-225, 2008.

[23] 이경림, 박재국,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실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289-308, 2007.

[24] 광정란, “중증 지체 장애대학생의 활동보조지원에 대한 문화적 기술적 사례연구”, 특수교육학연구, 제44권, 제1호, pp.85-108, 2009.

[25] 김미선, “대학의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을 통한 장애학생 도우미의 인식 보고”, 특수교육, 제10권, 제1호, pp.187-207, 2011.

[26] 이경준, “장애인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책변화와 지원요인 탐색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pp.103-130, 2008.

[27] 김동일, 손지영, 윤순경, “e-러닝에서 보편적 설계의 적용에 대한 사용성 평가”,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9권, 제2호, pp.97-127, 2008.

[28] 이은진,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근거이론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29] G. C. Thompson,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 Berelson and M. Janowitz(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d ed. New York: Free Press, 1996.

[30] Mckeown, Bruce and Thomas, Dan, *Q methodolog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98.

[31]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저 자 소 개

이 재 환(Jae-Hwan Lee)

정희원



- 2001년 8월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6년 8월 : 부산대학교 행정대 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행정학석사)
  - 2009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전공)
  - 2008년 3월 ~ 2011년 2월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조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및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이 수 경(Soo-Kyung Lee)

정희원



- 1998년 2월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7년 8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 전공(사회복지학석사)
  - 2012년 10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전공)
  - 2011년 3월 ~ 현재 : 거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 교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분야의 정책 및 제도